THE EST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4.25.]

청약Home 청약Home 앱 설치하기

Ⅰ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경기도 평택시(세륨1동 제외, 추가 2023.10.25.)	경기도 평택시(세륨1동 제외, 추가 2023.10.25.)	비투기과열지구 / 비청약과열지역

대상지역	해당지역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4.25(목)	24.05.07(화)	24.05.08(수)	24.05.09(목)	24.05.16(목)	24.05.18(토) 10:00 ~ 2024.05.22(수) 17:00	24.05.27(월)~24.05.29(수) 10:00 ~ 16:00

분양	24.05.07(화)	24.05.08(수)	24.05.09(목)	24.05.16(목)	24.05.18(토)~24.05.22(수)	24.05.27(월)~24.05.29(수)
방식	• PC : 09:00 ~ 18:00(마감일 09:00 ~ 17:30) • 모바일 : 09:00 ~ 17:30	• PC : 09:00 ~ 18:00(마감일 09:00 ~ 17:30) • 모바일 : 09:00 ~ 17:30	• 사업주체 주택조합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평택로 21)	• PC : 09:00 ~ 18:00 • 모바일 : 09:00 ~ 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해당 특별공급 사업장에 서면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시간은 해당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입니다. 청약통장 순위 및 예치금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예치금액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420만원	480만원	540만원	600만원	660만원	720만원	840만원	1,000만원

※ 납부방법 : 청약시 입주자모집 사이트(https://www.e-reversesantop.co.kr)에서 2개 은행 중 1개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2매 기재.
※ 계약 기준일 : 계약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금액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계약 가능 (계약일 기준 24회차까지 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금액 산정기준 : 매월 납입인정금액은 2만원,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1개의 금액만 인정되며 납입인정금액 초과 납입분은 인정하지 않음
※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합계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야 함
※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합계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합계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야 함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름		
일반공급	유형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해당지역 수요자 중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름	청약신청금 구분 없이 주택형별 당첨자 발표 후 10일 이내

- 특별공급 유형별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모집공고 선정되지 않은 분양대상 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중 해당 주택형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청약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다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중 해당 주택형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청약자가 없는 경우 일반공급 2순위 청약자 중 해당 주택형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청약자를 대상으로 선정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순위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납입인정횟수 초과 납입분은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신청금은 주택형별 별도 납부하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모집공고 선정되지 않은 분양대상 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중 해당 주택형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청약자를 대상으로 선정함